

기획

정보공개청구 시행 3년차, 담당부서조차 ‘물음표’

정보공개청구 제도이용 실태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김규래 기자 rlarbf041@khu.ac.kr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립대학 역시 정보공개의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우리학교도 관련 규정으로 〈정보공개규정〉을 마련했다. 이후 2013년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됐고, 현재 3년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규정내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는 구성원에게 낯설다. 이에 우리신문은 직접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해보고, 관련 실태를 짚어봤다.

3년간 정보공개청구 18건에 불과 '이송절차' 등 인지도 낮아

결국 총무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봤다. 〈경희대학교 정보공개청구 제도 이용 건수 및 내용〉은 총무팀에서 원활히 접수가 이뤄졌다. 하지만 〈교수 징계 청구 내역과 징계사례〉는 ‘타부서 담당’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재신청을 하고자 찾은 교무처에서는 총무팀 담당이라며 다시 접수를 거절했다. 이미 총무팀에서 오는 길이라고 설명한 뒤에야 신청이 이뤄졌다.

이는 아직 우리학교가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접수부서가 담당조직이 아니더라도, 담당조직을 알 경우 이송처리를 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우리학교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3년 4건, 2014년 11건이었다. 올해는 4월까지 3건이었다. 정보공개청구가 비교적 활발한 국립대의 경우 2013년 한 해에만 60건(강원대), 57건(부산대), 59건(충남대) 등이었다.

법률규정보다 빠른 행정처리 비공개 처분은 국립대 대비 높아

〈경희대학교 정보공개청구 제도 이용 건수 및 내용〉에 대한 답은 지난 14일 돌아왔다. 휴일을 제외하고 6일만이었다. 이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연장시 최대 20일 이내 답하게 돼있는 법률에 비해 빠른 처리였다. 답변은 ‘공개결정’에 따라 요구한 정보가 모두 기입돼있었다. 반면 〈교수 징계 청구 내역과 징계사례〉는 지난 13

The screenshot shows the Kyung Hee University LibGuides page fo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It includes sections on the Act's purpose,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for Administration (총무팀), and a note about the system being experimental. There is also a section on related regulations and a note that it i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이런 모습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

기준 및 지금 규모 인원’ 등 범위가 길고, 담당부서가 여러 곳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경희대학교 가로등 개수’, ‘000이 청송교도소 출소 후 곡성 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시는지 여부’ 등 황당한 내용 역시 존재했다. 총무팀 박우현 계장은 정보공개제도의 가치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 목적과 달리 주로 논문을 쓰거나 자료취합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서도 상당부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는 등록금현황, 성적평가 결과, 재적학생 현황, 졸업생의 취업현황 등 14개 항목 63개 지표가 공개돼있다. 별도의 청구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1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상당한 셈이다.

현재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증가세임을 감안할 때 우리학교 역시 행정부담은 줄이면서,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타 대학과 같이 사전정보공개 등을 이용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아놓는 한편, 올바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구성원의 교육도 고려해봐야 한다.

경희 미래협약 이을 ‘구성원 선언문’, 인권센터 설립 요구 명시

노동조합 ‘존중합의문’ 발표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노동조합(노조)에서 추진한 ‘상호존중 대학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구성원 선언문’이 발표됐다. 내용은 2011년 구성원간 합의에 의해 도출 됐던 ‘미래협약’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교수의회 의장, 각 캠퍼스 종학생회장, 대학원 종학생회장, 노조 위원장으로 이뤄진 구성원 대표가 주체가 된 선언문은 지난달 발생한 혜경박물관 사건을 계기로 구상됐다.

선언문의 내용은 미래협약에서 명시했던 교수, 직원, 학생 간 권리와 의무 내용과 동일하다. ▲교수는 학습자이자 삶의 후배인 학생(대학원생)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성실과 신의를 다할 것 ▲교수는 직원을 학술과 실천 활동의 협력자, 행정의 전문가로 존중할 것 ▲교직원은 교수를 교육·연구의 주체로서 명예와 권리를 존중할 것 ▲교직원은 미래의 주연인 학생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성실과 신의를 다할 것 ▲학생은 교수를 교육·연구자이자 삶의 선배로서 존경심을 갖고 대할 것 ▲학생은 직원을 행정전문가이자 ‘강의실 밖의 교육자’로 대할 것 등이다.

노조 송혜경 위원장은 “2011년도에 추진했던 미래협약은 실현되지 못했다”며 “당시의 좋은 취지를 잘 살려 매년 개교기념일 즘은 가지씩 실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구성원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미래협약은 유명무실화된 상태다.

당시 미래협약은 ‘더 나은 공동체, 존경받는 대학’이라는 비전아래 각 캠퍼스 부총장과 의무 부총장, 재정부총장, 교수의회 의장, 의학계열지회장, 국제캠퍼스회장, 각 캠퍼스 학부·대학원 종학생회 등이 공동추진위원장으로 나선 거교적인 차원의 일이었다. 구성원별 협약 외에도 ‘상호연관성’, ‘종체성과 안전성’, ‘배려와 존중’, ‘투명성과 윤리성’, ‘대학의 공공성’이라는 5개의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또한



윤리강령 제정, 지역사회와 공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명시했다. 하지만 선언 이후 이렇다 할 활동이 없어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미래협약의 사무국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서병식 과장은 “구성원 합의하에 선포됐지만 후속적 노력이 부족했다”며 “미래협약 사무국의 적극

적인 역할이 미비했던 부분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노조는 미래협약 내용은 공유하지만, 이번엔 실효성이 없는 선언에 그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선언문과 함께 ‘상호존중 대학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경희구성원 요구(요구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 상태다. 선언문과 마찬가지로 요구안도 각 구성원 대표와의 합의로 이뤄졌다. 요구안

은 ▲대학은 구성원간 상호존중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대학은 모든 구성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학교 내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인권센터를 즉시 설립해 운영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협약을 반면교사 삼아 대학본부에 실천을 위한 기구를 요구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이러한 기구를 통해 학교 층이 주가 돼서 의견수렴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각 구성원 대표들이 들어가 새로운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며 “현재 학교엔 이러한 기구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래협약 체결 당시에도 미래협약의 실행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독립기구로서 ‘미래협약실천위원회’를 운영할 계획했지만 현재와 같은 결과를 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본부가 요구안에 따라 새로운 실천기구를 수용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